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라목에서 사목을 신설한다.

- 다. 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 「도시개발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를 받은 경우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바.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 용지(주상복합 주거부문 포함)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3의2호를 신설한다.

-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 3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규칙 제26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 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경우 본인에 한한다)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